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 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 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2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2.1.1.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 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1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590

○ 방문목욕 비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⑥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 ⑦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